

【 9 】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출년월일 2003. 5. 30
제출자 양주군수

1. 제안이유

통합방위법(1997. 1. 통합방위법(1997. 1. 13. 법률 제5264호) 및 통합방위법시행령(1997. 5. 31 대통령령 제15383호)에 의거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통합방위대비책,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
(안 제2조)

나.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50인 이내로 하되, 부의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함
(안 제3조)

다. 통합방위협의회와 유사 기구인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의 통합 운영 근거를 정함(안 제4조)

라. 군 및 읍·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
마.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6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조, 제9조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와 양주군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방위대비책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4. 취약지역 대비책
5. 통제구역 설정
6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의장은 군수가 되며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.

1. 군의회 의장
2. 관할 작전책임을 달당하는 군부대의 장
3.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4. 국가정보원 관계자
5.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
6. 경찰서장
7. 교육장
8.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총무담당간사 : 총무과장
 2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업무 담당과장(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 협의회에 관한 사항 포함)
 3. 작전담당간사 : 관할 군부대의 작전참모(과장 또는 장교) 및 경찰서 경비과장
 4. 예비군담당간사 : 예비군 관련 부대장(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 포함)
- ④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협의회의 통합운영) 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.

1.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군방위협의회
2.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군민방위협의회

제5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에는 부군수, 읍·면에는 읍·면장이 된다.

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군의 종합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, 읍·면의 종합상황실장은 총무담당과장(주사)이 되며,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·통제한다.

③군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(급식)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10인의 반원으로 편성하고, 읍·면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재정 및 보급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5인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

④분야별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을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관계자로 하되, 읍·면은 달당공무원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.

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제6조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
 - 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
 -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
 - 다.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
 - 라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
 - 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
 - 바.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, 봉사활동의 실시
2. 개활지에 대하여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
 - 가. 10년생이상의 임목
 - 나. 모래벙커 및 연못
 - 다. 이동식 장애물(바리케이드, 철침 또는 1.5미터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등)
 - 라.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,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
3.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
 - 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
 - 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

제7조(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.

③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의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.

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협의회에 부의 할 안전의 사전심의
2.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3. 관계 행정기관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·조정

⑤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제8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규정)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